

### Ⅲ. 예산총칙



제1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 
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회 계 별   |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| 7,341,210,000 | 220,236,300 |
| 일 반 회 계 |                   | 6,281,000,000 | 188,430,000 |
| 특 별 회 계 |                   | 1,060,210,000 | 31,806,300  |
|         |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| 518,556,000   | 15,556,680  |
|         | 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  | 518,556,000   | 15,556,680  |
|         |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 | 541,654,000   | 16,249,620  |
|         |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  | 456,797,000   | 13,703,910  |
|         | 치 수 사 업           | 20,341,000    | 610,230     |
|         | 경 북 도 립 대 학 교 운 영 | 9,938,000     | 298,140     |
|         | 광 역 교 통 시 설       | 2,898,000     | 86,940      |
|         |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       | 42,480,000    | 1,274,400   |
|         |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   | 9,200,000     | 276,000     |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,81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5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  
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## IV. 예산규모



(단위:천원)

| 회 계 별         | 예 산 액         | 기정예산액         | 증(△)감       | 증 감<br>비 율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| 7,341,210,000 | 6,993,982,000 | 347,228,000 | 4.96       |
| 일 반 회 계       | 6,281,000,000 | 5,895,400,000 | 385,600,000 | 6.54       |
| 특 별 회 계       | 1,060,210,000 | 1,098,582,000 | △38,372,000 | △3.49    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| 518,556,000   | 521,793,000   | △3,237,000  | △0.62      |
| 지역개발기금운영      | 518,556,000   | 521,793,000   | △3,237,000  | △0.62      |
| 기 타 특 별 회 계   | 541,654,000   | 576,789,000   | △35,135,000 | △6.09      |
| 의료급여기금운영      | 456,797,000   | 456,796,000   | 1,000       | 0.00       |
| 치 수 사 업       | 20,341,000    | 42,398,000    | △22,057,000 | △52.02     |
| 경북도립대학교운영     | 9,938,000     | 9,329,000     | 609,000     | 6.53       |
| 광 역 교 통 시 설   | 2,898,000     | 9,254,000     | △6,356,000  | △68.68     |
|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   | 42,480,000    | 52,300,000    | △9,820,000  | △18.78     |
| 학 교 용 지 부 담 금 | 9,200,000     | 6,712,000     | 2,488,000   | 37.07      |